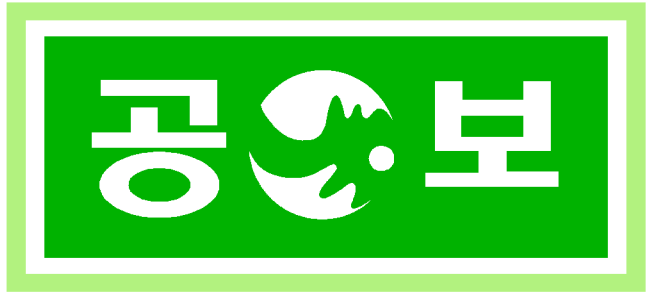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900 호 2014. 8. 4(월)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68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69호[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5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04호[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감사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8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05호[울산광역시 북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11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23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1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24호[도로명주소 고시]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25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9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653호[3013년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657호[문화예술회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계획] 23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관								
--------	--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진용



2014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68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를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로 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문화”란 울산광역시 북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
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한다.

제11조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예술 담당국장”을 “지역문화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지역문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예술”을 “지역문화”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자”를 “지역문화 업무담당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각각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14. 7. 29. 시행되는 「지역문화진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을 “문화진흥기금” 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시행에 따른 용어 및 명칭 변경
(제명,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제16조)
 - 문화예술, 지역 문화예술 → 지역문화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진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진용



2014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착공사 행위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금액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을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0조의 3”을 “법 제30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의 제목“(부담금 납입절차 등)”을“(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법 제30조의 3”을 “법 제30조의3”으로 하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의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14조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을 “100분의 3에 상당하는”으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을 “영 제44조 별표 7”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및 굴착공사 행위신고 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개정(제4조)

【현행】

-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초과: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나. 상위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조정(제14조)

【현행】

-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개정】

-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

- 다.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제12조, 제13조, 제17조)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감사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진용



2014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04호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감사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감사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 면>

NO.		명예구민감사관증	
사 진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감사관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인			

가로 8.5cm, 세로 5.5cm (사진 가로 2.5cm, 세로 3cm)

<후 면>

<p>주 의 사 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증을 휴대한 명예구민감사관은 구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관계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2. 이 증을 휴대한 명예구민감사관 또는 직무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0000-0000)로 문의 바랍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색상 : 노란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의 규정이 2014. 8. 7.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명예구민감사관증) 기재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하여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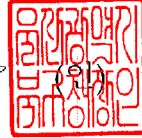
2. 주요내용

- 명예구민감사관증 기재내용 변경(별지 제1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기타 용어 정비 등

울산광역시 북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진용



2014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05호

울산광역시 북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시행주체가 되는 일정규모 이
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을 공사의 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직접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 대형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와 같다.

1.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문화유적의 보수공사

제3조(감시관의 위촉)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공사 착공 전에 5명 이내의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이하 “감시관”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감시관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감시관 위촉일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고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③ 감시관은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에서 사업시행 전에 선정하여 기획홍보실장에게 위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시행부서는 감시관에게 구민감시관증 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감시관은 직무수행 시 구민감시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감시관의 자격) ① 감시관의 자격은 위촉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토목, 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또는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 관련 직무에 종사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공사의 이용관계, 부지편입 등의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그 주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이 있는 사람
4. 지역유지로서 덕망과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시관이 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수주업체의 임직원 또는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해당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 또는 퇴직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건설공사 관련 단체·조합 등 이익단체의 임직원
4. 기타 구청장이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감시관의 임무 등) ① 감시관은 이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사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본설계 시: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 제시
2. 공사시행 시: 시공의 적정성, 안정성과 주민불편 및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한 현장위주의 감독

3. 준공검사 시: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및 민원사항 해결 여부 등의 검사
입회

②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 및 시공회사는 감시관의 임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시) ① 감시관이 해당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또는 시정·
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감독관에게 즉시 이의 시정·개
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감독일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감시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야 한다.

③ 감시관은 제1항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시, 기획홍보실장에게 서면으
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획홍보실장은 감시관의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감시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의 참석, 출장 시에는 예
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9cm —————→

No. _____

구 민 감 시 관 증

성 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주 소 : _____

감시대상공사 : _____

위 사람은 「울산광역시 북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구민감시관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6cm
↓

(뒷 면)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앞면 감시대상공사에 한하여 위촉일부터 준공 검사 종료 시까지 유효함.
2. 이 증에 의한 구민감시관은 「울산광역시 북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시행부서 및 시공회사는 임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증을 휴대한 구민감시관 또는 직무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000-0000)로 문의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의 규정이 2014. 8. 7.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명예구민감사관증) 기재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규정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민감시관증 기재내용 변경(별지 제1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4 - 123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4. 7.17.	2014 - 18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	울산지방 해양항만 청장	복구 정자동 425-13 지선 복구 어물동 1331-1지선	24,239	2014.7.20. ~ 2016.10.19.	강동해안 일대의 연안취식 방지를 위한 공작물 설치	조건부 허가
2014. 7.28.	2014 -19	울산광역시 복구 산성로 40, 522호	울산지식 산업센터 최현홍	복구 산하동 367-16 지선	75	2014.7.28. ~ 2014.8.31.	하계휴양소 설치 운영	조건부 허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4 - 124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중산2길 9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8.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읍면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지구 58 9L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2길 9	2014-08-04	법정동 명칭을 사용하여 부여하였다.	2013-12-30	
2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009	울산광역시 북구 모동화산로 8-1	2014-08-04	모동화산로(단거리)에 조성된 도로로 도로명 부여하였다.	2010-04-27	
3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46-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7길 3	2014-08-04	양정(관비드나)가 많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며 현재(이)지역 대표지명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이므로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4-01-05	
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118 1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3길 71	2014-08-04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4-12-27	
5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신86-6	울산광역시 북구 성해1길 40-12	2014-08-04	기존 자연마을인 성해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4-08-09	
6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432	울산광역시 북구 가동길 13-2	2014-08-04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다.	2004-08-09	
7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34-1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1길 201-2	2014-08-04	옛 지명인 대안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4-08-09	
8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71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795-29	2014-08-04	이 지역의 지형에 따라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9-08-20	
9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703	울산광역시 북구 원지계방길 71-26	2014-08-04	원지마을 제방을 지나는 길이라 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4-08-09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 125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1의 1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척과 (☎052-241-7583)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세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8.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1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34-23	2014-08-04	건축물대장 말소	
2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2길 13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511-2	2014-08-04	건축물대장 말소	
3	울산광역시 북구 오시골5길 2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84-115	2014-08-04	건축물대장 말소	
4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인길 14-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39-1	2014-08-04	건축물대장 말소	
5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 29-4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91-1	2014-08-04	건축물대장 말소	
6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6길 2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71B 6-2L	2014-08-04	건축물대장 말소	
7	울산광역시 북구 오시골5길 19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84	2014-08-04	건축물대장 말소	
8	울산광역시 북구 수박골1길 27-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353	2014-08-04	건축물대장 말소	
9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569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5-1	2014-08-04	건축물대장 말소	
10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5길 8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07	2014-08-04	건축물대장 말소	
11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8-2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58-13	2014-08-04	건축물대장 말소	
12	울산광역시 북구 속심이길 18-5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45	2014-08-04	건축물대장 말소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653호

2013년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4-56호)에 따라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한 참여자에게 2013년 하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수령계좌 제출 및 지급신청을 촉구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 사유로 송달 불가하거나, 현재까지 수령하지 않은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 목 : 2013년 하반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4-56호)
3. 공고기간 : 2014. 7. 29. ~ 2014. 8. 12.(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 문의 :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052-241-7763)
6. 공고기간 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현금) 수령을 위한 주소, 계좌번호 등 인센티브 지급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56호)에 따라 지급대상자 명의로 기부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미수령자 현황 1부.

○ 2013년 하반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미수령자 현황

ID	이름	지급인센티브(원)	주소	가입일
	3건	30,000		
BBSS77	김정화	17500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60, ***동 ***호(연암동, 벽산늘푸른아파트)	2012-05-16
lggin247	박성호	6000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4길 17, ***동 ***호(연암동, 웰지진로아파트)	2012-12-20
ssswon313	김종화	6500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 ***동 ***호(염포동, 염포성원상떼빌)	2012-12-19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657호

문화예술회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기간제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4년 7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근무지	인원(명)	업무	근무기간
북구 문화예술회관	1(여)	놀이방 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민원 안내	2014. 9. 1. ~ 2014. 12. 31. (4개월간)

2. 모집방법

- 가. 서류접수 : 2014. 8. 4.(월) ~ 8. 15.(금)(12일간)
 나. 서류심사 : 2014. 8. 18.(월)
 다. 면 접 : 2014. 8. 25.(월) 14:00(예정) 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모집일정

- 가. 접수일정
- 1) 기 간 : 2014. 8. 4.(월) ~ 8. 15.(금) 09:00~18:00
 - 2) 장 소 : 북구문화예술회관 1층 사무실
 - 3) 접수방법 : 개별신청(우편접수 불가)

나. 시험일정

- 1) 서류심사 : 2014. 8. 18.(월)[합격자 개별 통지]
- 2) 면접시험 : 2014. 8. 25.(월) 14:00 예정, 북구문화예술회관 1층 다목적실

5. 최종 합격자 발표 : 2014. 8. 26.(화) 개별 유선 통지

6. 제출서류

- 가. 신청서 1부
-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다.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라.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근로조건

- 가. 근무시간 : 주 40시간
- 나. 보수
 - 1) 기본급(일당) : 41,680원
 - 2) 수당 : 가족수당, 주차수당, 연차수당

8.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근무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재직한 자는 재직 기간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11개월이상 근무 불가)
- 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241-7352, 7353)

(붙임 1)

사	신 청 서			
	신 청 인	인		
진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전화 번호	자택
				H.P
E-mail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령청
				추 천 인